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855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편성 대비 95,906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입 계획에 반영하고,

나. 증가한 예치금 회수액을 반영하여 2025년 지출 계획상 비융자성 사업비는 86,064백만원으로, 여유자금 예치금은 78,524백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 2025년 수입계획 변경 내용

(단위: 천원, %)

구분	당초 (A)	1차 변경 ※변경없음	2차 변경 (B)	증감(B-A) (증감률)
합계	68,692,849	68,692,849	164,598,298	95,905,449 (139.6)
세외수입	31,279,077	31,279,077	31,279,077	- (-)
경상적세외수입	3,405,505	3,405,505	3,405,505	-
이자수입	3,405,505	3,405,505	3,405,505	-
공공예금이자수입	3,405,505	3,405,505	3,405,505	-

(단위: 천원, %)

구 분	당 초 (A)	1차 변경 ※변경없음	2차 변경 (B)	증 감(B-A) (증감률)
임시적세외수입	1,523,159	1,523,159	1,523,159	-
기타수입	1,523,159	1,523,159	1,523,159	-
그외수입	1,523,159	1,523,159	1,523,159	-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26,350,413	26,350,413	26,350,413	-
부담금	26,350,413	26,350,413	26,350,413	-
부담금	26,350,413	26,350,413	26,350,413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413,772	37,413,772	133,319,221	95,905,449 (256.3)
보전수입등	37,413,772	37,413,772	133,319,221	95,905,449
예치금회수	37,413,772	37,413,772	133,319,221	95,905,449
예치금회수	37,413,772	37,413,772	133,319,221	95,905,449

- 2025년 지출계획 변경 내용

(단위: 천원, %)

구 분	당 초 (A)	1차 변경 (증감률)	2차 변경 (B)	증 감(B-A) (증감률)
합 계	68,692,849	68,692,849	164,598,298	95,905,449 (139.6)
비용자성사업비(정책사업비)	1,096,381	1,306,381	86,064,381	84,968,000 (7749.9)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1,096,381	1,306,381	86,064,381	84,968,000
다동공원 조성사업	1,096,381	1,096,381	85,854,381	84,758,000
시설비	-	-	84,758,000	84,758,000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96,381	1,096,381	1,096,381	-
창동차량기지 S-DBC조성 MP단 운영	-	30,000	30,000	30,000
사무관리비	-	30,000	30,000	30,000

(단위: 천원, %)

구 분	당 초 (A)	1차 변경 (증감률)	2차 변경 (B)	증 감(B-A) (증감률)
김포공항 모빌리티 산업개발 진흥지구	-	50,000	50,000	50,000
시설비	-	50,000	50,000	50,000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 조사 및 분석	-	50,000	50,000	50,000
시설비	-	50,000	50,000	50,000
성북동 골목길재생 매입공가 보수	-	30,000	30,000	30,000
시설비	-	30,000	30,000	30,000
수색역 일대 지역상생 발전계획	-	50,000	50,000	50,000
시설비	-	50,000	50,000	50,000
행정운영경비	10,000	10,000	10,000	-
기본경비	10,000	10,000	10,000	-
기금 관리비	10,000	10,000	10,000	-
사무관리비	10,000	10,000	10,000	-
재무활동	67,586,468	67,376,468	78,523,917	10,937,449 (16.2)
보전지출	67,586,468	67,376,468	78,523,917	10,937,449
여유자금 예치	67,586,468	67,376,468	78,523,917	10,937,449
일반예치금	67,586,468	67,376,468	78,523,917	10,937,44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이민국 (☎2133-8621)